

#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

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제36조에 따라 정관 일부 개정 사항을 보고 드림

##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

제36조(정관의 변경)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,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정관 현황

- 정관명칭 :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
- 구 성 : 총 7장 39개조 및 부칙

## 정관 개정사항 : 제38조(해산) 제2항 개정

- 서울기술연구원 해산 시 잔여재산 서울연구원 승계 조항 개정
  -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해산 시 잔여재산을 서울특별시 허가를 득하여 서울연구원에 승계하도록 개정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38조(해산) ①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연구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<u>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귀속한다.</u></p>	<p>제38조(해산) ①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연구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<u>이사회의 의결 및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득하여 서울연구원에 승계한다.</u></p>

- ※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관련 조항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서울기술연구원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- 제5조(재산의 승계) 서울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서울연구원이 승계한다.

## 〈신구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38조(해산) ①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연구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<u>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귀속한다.</u></p>	<p>제38조(해산) ①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연구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<u>이사회의 의결 및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득하여 서울연구원에 승계한다.</u></p>

### 향후 계획

- 시의회 보고 및 서울시 승인 요청
- 서울시장 승인 후 정관 효력 발생